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8호		
의안명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	제출년월일	2019.03.2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증가하지만 실패와 부담감으로 창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규모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민간 주도의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사업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외협력 채널 구축, 투자연계 등으로 종합적인 창업 솔루션을 제공함.
- 따라서 수준 높은 창업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동의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명 칭 :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 위 치 :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지하 1층
- 개 소 일 : 2019년 8월 예정
- 시설규모 : 186.77㎡
- 시설현황 : 입주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상담실 등
- 운영 프로그램(안)
 - 창업 전문 상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 컨설팅 운영
 - 창업카페 방문 창업자 및 주변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시 상담 창구 개설
 - 창업 지원 교육
 - 모의 창업 스쿨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 아이템 선정과 창업 방법에 대한 체험형 교육
 - 창업 아카데미 : 창업절차,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
 - 네트워킹 지원
 - 창업자와 재창업자, 중·소상공인간 교류를 위해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서울시 산하 창업기관 등 전문 운영기관, 민간 엑셀러레이터들과의 제휴를 통해 노하우 벤치마킹, 연계 프로그램 운영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사무의 위탁)
- 위탁기간 : 2019. 8. 1. ~ 2022. 7. 30.(3년)
- 위탁업무
 - 창업카페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안전점검, 시설유지·보수관리 등)
 -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교육, 행사, 홍보 등)
 - 주변 대학, 중·고등학교 및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교류·협력
 -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소요예산 : 140,000천원(전액 시비)

다. 2019년 예산 운영계획

- 총 액 : 198,300천원(시 140,000천원, 구 58,300천원)
 - 민간이전 : 140,000천원(전액 시비)
 - ▶ 인건비 : 56,000천원
 - ▶ 사업비 : 84,000천원
(창업상담 멘토링, 창업지원 교육, 네트워킹&연계)
 - 자산취득비 : 15,000천원(구비)
 - 일반운영비 : 43,000천원(구비)
 - ▶ 임차료 : 40,000천원(4,000천원×10개월)
 -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업무추진비 : 300천원(구비)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II. 검토 의견

1. 동의안 제출 개요

-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여 창업활성화를 제고하고, 창업가에게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창업공간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6기 공약으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1월 송실대입구역에 서울창업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2018.9월 천호역 인근에 서울창업카페 7호점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창업카페 운영현황>

구 분	송실대입구점	홍대점	신촌점	대학로점	충무로점	불광점	천호점
장 소	송실대입구역	마포구 홍대인근	연세대 정문 앞	국민대학교 건물	충무로 지하보도 내	불광역 인근	천호역 인근
규 모	116㎡ (35평형)	223.77㎡ (68평형)	132㎡ (40평형)	332.06㎡ (100평형)	297㎡ (90평형)	186.7㎡ (56평형)	315.3㎡ (56평형)
개소일	'16. 1월	'16. 3월	'16. 7월	'17. 3월	'18. 4월	'18. 8월	'18. 9월
운영기관	송실대 산학협력단	(재)신홍합밸리	연세대 창업지원단	국민대 산학협력단	중구청 직영	상명대 산학협력단	(주)희망설계 [사회적기업]

- 2018.5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 서울창업카페 적합 후보지로 서초구·양천구·중랑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8월경 창업카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조성하여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2.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제4호에 따른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에 해당되고, 같은 조례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동의안은 서초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8조(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협약체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창업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주변 대학 및 중·고등학교,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교류·협력,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창업지원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 생태계의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분야로, 창업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최신 트렌드 반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 민간창업지원센터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카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위치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사무의 위탁)

-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 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 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⑤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당해 위원회를 통괄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치도



□ 현장사진 : 교대역 3호선 「서울교통공사 쇼핑몰」 107호~110호

